

애경케미칼㈜ 기업지배구조헌장

2022. 5. 13.





전 문

애경케미칼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고객들에게 비즈니스 혁신을 지원하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친환경, 탄소저감 등을 실천하는 연구개발 등의 새로운 변화를 통하여 인류의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회사는 사랑과 존경을 바탕으로 앞서가는 사고, 기술, 경영으로 구성원과 이해관계자의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창조하여 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을 지향한다.

이러한 회사의 비전과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회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 확립이 중요하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의지를 담아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애경케미칼㈜ 기업지배구조헌장"을 다음과 같이 제정, 선포하여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제1장 주주

제 1 조 (주주의 권리)

- ① 주주는 상법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한 주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주주의 기본적인 권리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도 박탈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 ② 회사의 존립 및 주주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 ③ 회사는 주주가 최대한 참가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의 일시와 장소를 결정하고,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
- ④ 주주는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총회의 의안을 제안할 수 있고,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회사는 주주가 자신의 의결권을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고려하고,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 2 조 (주주의 공평한 대우)

① 주주는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지며, 주주의 본질적인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특정 주주에 대한 의결권의 제한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 ② 회사는 주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충분하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공시의무가 없는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도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제공한다.
- ③ 회사는 위법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내부 통제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 3 조 (주주의 책임)

- ① 주주는 자신의 의결권 행사가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회사의 발전과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지배주주 등 회사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는 회사와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여야 하며, 이에 반하는 행동으로 회사와 다른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이사회

제 4 조 (이사회의 기능)

- ① 이사회는 회사 경영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며, 회사의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 감독 기능을 수행한다.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 ② 이사회는 관련 법령이나 정관, 이사회 규정에서 정하는 주요한 사항을 제외하고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 내 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 5 조 (이사회의 구성 및 이사 선임)

- ① 이사회는 경영 활동에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한 규모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사회 내에 설치된 위원회가 운영되기에 충분한 수의 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 ② 이사회에는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사외이사를 두어야 하며, 그 수는 이사회가 실질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규모여야 한다.



- ③ 이사회는 경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다양성을 지닌 이사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장되어야 한다.
- ④ 회사는 주주가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판단 시간을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6 조 (사외이사)

- ① 사외이사는 회사와 일정 수준 이상의 계약, 거래 등 중대한 관계가 없어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② 회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회사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적합한 인사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다.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및 자격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한다.
- ③ 사외이사는 필요 시 회사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사외이사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여야 하며, 이사회가 개최될 때에는 사전에 의사결정 사안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검토한 후 참석한다.
- ⑤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절차에 의하여 임·직원이나 외부 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⑥ 회사는 사외이사가 회사의 경영실태를 적기에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회사의 업무집행 상황 등 경영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거나 제공하며, 사외이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제 7 조 (이사회의 운영)

- ①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 ②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규정을 둔다.
- ③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작성하고 회의내용을 유지, 보관한다.



- ④ 회사는 개별 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주요 공시대상 안건에 대한 개별 이사의 찬반여부 등활동내역을 공개한다.
- ⑤ 이사는 필요 시 모든 이사의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 가능한 원격통신수단을 활용하여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

제 8 조 (이사회 내 위원회)

- ① 이사회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이사회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각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하며, 각 위원회의 규정에 명시하도록 한다.
- ③ 이사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결의는 이사회의 결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9 조 (이사의 의무)

- ①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사는 직무수행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② 이사는 회사와 주주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결과를 추구하여야 하며, 자기 또는 제 3 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이사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회사의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 3 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 10 조 (이사의 책임)

- 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소홀히 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사에게 악의나 중과실이 있는 때에는 제 3 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 ② 이사가 경영판단을 하는 과정에 있어 합리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상당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신중하게 충분히 검토한 후, 성실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회사에 페이지 5/9



최선의 이익이라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등 선관주의 의무와 충실의무를 다하였다면 그러한 이사의 경영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③ 회사는 이사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에 대비하고 안정적 경영활동 지원을 통해 유능한 자를 이사로 영입하기 위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사를 위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 11 조 (평가 및 보상)

- ① 이사회의 경영활동 내용은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하며, 그 평가결과를 이사의 보수 등에 적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 ② 이사회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사회와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 한다.
- ③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

제3장 감사기구

제 12 조 (감사위원회)

- ① 감사위원회는 독립성과 전문성 유지를 위하여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3 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위원 중 1 인 이상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관련 법령 및 정관, 이사회 규정,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고, 필요 시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③ 감사위원회는 매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추가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고, 관련 임원 및 외부 감사인을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 ④ 감사위원회는 매 회의마다 회의에 대한 의사록을 작성한다.

제 13 조 (외부감사인)



- ① 회사는 외부감사인이 회사와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법적, 실질적 독립성을 유지하며 공정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외부감사인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감사보고서에 관한 주주의 질문이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외부감사인이 감사 받은 재무제표와 함께 정기적으로 공시되는 정보 중에서 감사결과와 배치되는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외부감사인이 감사 시 회사의 부정행위 또는 위법행위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회사는 외부감사인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존속가능성에 대해 고려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회사는 외부감사인이 외부감사 활동 중에 확인한 중요사항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이해관계자

제 14 조 (이해관계자의 권리 보호)

- ① 회사는 회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가치와 권리를 존중하고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② 회사는 소비자 보호, 환경 보호 등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③ 회사는 임직원 등 구성원의 권리를 존중하고,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구성원의 삶의 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한다.
- ④ 회사는 공정거래 관련 법률의 준수를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의 확립을 촉진하며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
- ⑤ 회사는 채권자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합병, 감자, 분할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채권자 보호절차를 준수한다.
- ⑥ 이해관계자가 주주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 이해관계자 및 주주로서의 각각의 권리는 보호되고 행사될 수 있도록 한다.



제 15 조 (이해관계자의 경영감시 참여)

- ① 이사회와 경영진은 회사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성장에 이바지하기 위해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또는 우려사항 등에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한 경우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주주 및 이해관계자와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회사 임직원의 경영참가 형태와 수준은 회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 ④ 회사는 법령에서 요구되는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해관계자의 정보 제공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노력한다.

제 16 조 (윤리경영)

- ① 회사는 건전하고 공정한 기업문화를 창달할 수 있도록 윤리규범을 제정하고 이를 구성원 모두에게 게시한다.
- ② 회사는 사랑과 존경을 바탕으로 앞서가는 사고·기술·경영으로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창조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에 공헌하는 경영을 실천하기 위하여 윤리규범을 모든 경영활동에서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 ③ 회사는 국내외 모든 법규와 시장질서를 존중하고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솔선수범하며, 사회적 가치와 관습을 존중하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한다.

제5장 시장에 의한 경영감시

제 17 조 (공시)

- ① 회사는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공시사항을 성실하게 공시하고, 이외에도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성실히 공시한다.
- ② 회사는 정기공시 이외에 중요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그 내용을 적시에 정확하게 공시한다.



- ③ 회사는 공시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고, 이해관계자가 이용하기 용이하도록 노력한다.
- ④ 회사는 공시책임자를 지정하여 효과적인 공시업무를 수행하고, 회사의 중요 정보가 공시책임자에게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내부 정보전달 체계를 갖춘다.
- ⑤ 회사는 중요한 기업정보의 공개 범위나 공개 시기에 있어 특정인을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으며,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동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시한다.
- ⑥ 회사의 대표이사와 공시책임자는 재무보고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인증한다.

제 18조 (기업 경영권 시장)

- ① 회사의 인수, 합병, 분할, 영업의 양수도 등 회사 경영권의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 ② 회사의 경영권 방어행위는 일부 주주 또는 경영진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방법으로 행해져서는 아니 된다.
- ③ 회사는 합병, 영업의 양수도 등 중요한 구조변경에 반대하는 주주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실질가치를 반영하는 공정한 가액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2022.5.13.)

이 헌장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2022 년 5월 13일에 제정되고, 같은날부터 시행한다.